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2758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20.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566,4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66,4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청구취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9. “C는 원고에게 10,051,367원 및 그 중 4,930,949원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90733), 위 판결은 2014.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와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어머니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3. 5. 사망하였고, C는 망인의 재산을 형인 피고 등과 공동상속하였다(C의 법정상속분 1/5).

2) 그런데 C는 2020. 6. 22.경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1)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343,006,820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80만 원(2020. 7. 13. 기준 실제 피담보채무액 166,275,7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방법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앞서 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협의 후인 2020. 7. 28.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15,566,464원을 한도로 35,346,224원 $\{=(\text{시가 } 343,006,820\text{원} - \text{피담보채무액 } 166,275,700\text{원}) \times \text{C의 상속분 } 1/5\}$ 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15,566,4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

목록

1.경상북도 경산시	
대	595 m
2.경상북도 경산시	
	동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및단독주택	
	동
1층창고(철근콘크리트)	
133.20 m	
2층주택(시멘트벽돌)	
113.67 m	

